

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은 2011.5월부터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, 2019.06.30.자로 3번째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금년 1.22.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, 청소년 문화·체육·인성 등 수련활동과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7년간 안정적으로 수련관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하여,
- 다.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1.06.30.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재계약 사유

-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,
- 지난 3년간 강북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는 참·빛의 교육이념과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세계적인 지성인의 양성을 주요 기능으로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한 초·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34년 설립된 법인임
-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시설을 안정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, 특히 숙박시설(채움빌)을 활용하여 주변 자연환경을 접목한 전문 프로그램, 특성화 사업(네이처드림센터) 및 4차 산업 등 변화하는 교육사회 정책을 반영한 증강현실, 코딩 등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-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강북청소년수련관을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

○ 3년간 주요 실적

- 이용인원

사업구분	이용 인원	청소년 이용인원	청소년 이용률
2016년	531,670명	352,510명	66%
2017년	564,244명	371,882명	66%
2018년	662,027명	466,352명	70%

- 지역·학교연계 실적

구분	연도	기관	프로그램
학교연계	2016	33	25
	2017	86	66
	2018	71	49
지역사회연계	2016	153	50
	2017	141	54
	2018	85	26

- 주요 우수사항

- ▶ 2016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
- ▶ 2017년 교육부 지역특성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장려상 수상
- ▶ 2017년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우수 등급
- ▶ 임흥길 대장과 함께 하는 희망원정대를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

다. 위탁 사무의 범위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
- 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북구 4.19로 74
- 개관일자 : 2001.03.10.
- 시설규모 : 부지 6,801 m^2 , 연면적 6,409 m^2 (지하 2층, 지상 3층)
- 지원시설 : 수영장, 체육관, 음악실, 헬스장, 프로그램실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년 (2019.07.1 ~ 2021.0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)

- 소요예산 : 5,479백만원('19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1,074백만원, 물건비 717백만원, 경상이전 219백만원, 자본지출 701백만원, 사업비 2,260백만원, 사업외 지출 등 기타 508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(☎2133-4122)